

# 변경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등 안내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surtax)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지방세법 법률 제12153호, 2014.1.1.시행)함에 따라 2014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회원님들께 변경되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과 2015년부터 시행되는 내국법인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특별 징수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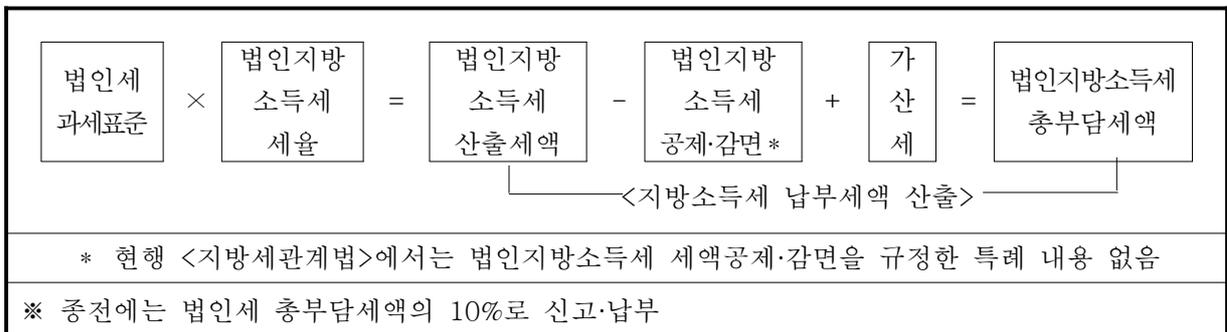
## 1.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 개편

### 가. 개편개요

-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법인분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법인지방소득세로 명칭 변경)되면서 종전에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과세하던 부가세(surtax)에서 이제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 독자적인 세율과 절차에 따라 과세하도록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지방세법 법률 제12153호, 2014.1.1.시행).
- 이에 따라, 종전에는 단순히 법인세총부담세액(=산출세액-각종 공제·감면세액+가산세등)의 10%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로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나,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독자적인 과세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와는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계산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나.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개정내용

-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시행시기(법률 제12153호, 부칙 제2조)

-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납부부터 개편된 과세체계가 적용되므로 금번 12월 결산법인부터 적용됩니다.

2) 과세표준과 세율

-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상 과세표준과 동일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9).
- ②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20).

<종전>			<변경>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법인세 총결정세액	10%		2억원 이하	과세표준 ×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초과금액 × 2%)
			200억원 초과	3억9,800만원+ (200억초과금액 × 2.2%)

3) 공제·감면세액

-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었던 지방세 관련 공제·감면 규정 등은 2014. 12. 23(법률 제12853호) 일자로 삭제되었고, 2014. 12. 31(법률 제12955호) 일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었으나, 법인지방소득세에 관련된 감면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감면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는 법인세액의 10% 이상을 법인지방세로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신고·납부

구분	신고·납부 기한
내국법인 확정신고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연결법인 확정신고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지방세법 제103조의37)
수정신고, 세무서 결정·경정	수정신고(세무서 결정·경정 포함)시 동시 (지방세법 제103조의24) ※ 종전의 경우 수정신고일, 결정·경정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납부

5) 과세체계 개편 전후 주요 신고·납부 변경사항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과세체계 개편 전후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신고· 납부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정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li> <li>- 연결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정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편전과 동일</li> <li>- 개편전과 동일</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 신고기한 + 1개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 세액결정·경정시, 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 : 법인세 신고 + 1개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 세액결정·경정, 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외국법인 신고기한 연장 제외)</li> </ul>
신고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부과)</li> <li>▪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당초 신고 세액의 1/10 미달 시 ⇒ 결정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방소득세액에서 가감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시 미신고 처리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li> <li>▪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당초 신고 세액의 1/10 미달시에도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신고 (1/10 미달시 가감 제도 폐지)</li> </ul>

신고서 첨부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li> <li>▪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계산내역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li> <li>▪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li> <li>▪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li> <li>▪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li> <li>▪ 세무조정계산서(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li> </ul>
-----------------	--	---

6) 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1) 서울특별시에 납세지가 있는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이택스)

① 대행인신청이 필요한가?

서울특별시에서는 별도의 승인 없이 대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전자신고 방법

수입 법인별로 각각 신고할 법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회계프로그램 상에서 작성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확정신고서와 법인지방소득세무조정계산서 및 재무제표를 위택스 또는 이택스(서울시 운영)에서 변환하여 오류사항을 체크한 후 전송하면 됩니다.

(2) 서울특별시 이외의 시·군에 납세지가 있는 법인의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위택스)

① 대행인신청이 필요한가?

서울특별시 외의 시·군에서는 반드시 한번은 관할 시·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신청방법은 위택스에서 대행인 신청 란에서 작성하여 전송하고, 증빙서류인 세무사등록증은 관할 시·군에 스캔첨부(jpg파일)하거나 FAX전송하여야 합니다.

② 전자신고 방법

수입 법인별로 각각 신고할 법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회계프로그램 상에서 작성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확정신고서와 법인지방소득세무조정계산서 및 재무제표를 위택스에서 변환하여 오류사항을 체크한 후 전송하면 됩니다.

7)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의 공통점과 차이점

구 분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1. 신고기한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2. 신고서 제출기관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
3. 신고할 사항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4. 첨부서류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제표
	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무조정계산서
	3	그 밖의 서류(조정계산서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등)	그 밖의 서류
5. 제재사항		첨부서류중 1과 2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로 본다.	※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제재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2. 내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 도입

### 가. 변경내용

-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 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주1)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반기 납부자는 1월 10일, 7월 10일 납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29).
-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계산서와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2서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종전에는 소득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에서 지방소득 세를 특별징수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인 법인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인 지방 소득세도 함께 특별징수하여야 합니다. 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법인세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고,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 합니다.
- 만약 현행처럼 국세인 법인세만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불이익이 있사오니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1 : 특별징수란 국세의 원천징수와 비슷한 개념으로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 자대신 미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나. 변경 전·후 사례비교

#### 사례1) 내국법인에서 내국법인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비금융기관간 거래)

내국법인 갑이 내국법인 을에게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10,000원(비영업대금이자)을 지급하는 경우의 갑이 원천징수(특별징수포함)하여야 할 세액은?

내국법인 갑이 내국법인 을에게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10,000원(비영업대금이자)을 지급 하는 경우의 갑이 원천징수(특별징수포함)하여야 할 세액은?			
구 분	법인세	지방소득세	합 계
<종 전>	2,500원(=10,000원 × 25%)	-	2,500원
<변 경>	2,500원(=10,000원 × 25%)	250원(=2500원 × 10%)	2,750원
	법인세는 동일	지방소득세 추가징수	

**사례2) 금융기관(은행등)에서 내국법인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금융기관(은행)인 갑이 내국법인 을에게 정기예금이자로 1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의 갑이 원천징수(특별징수포함)하여야 할 세액은?

금융기관(은행)인 갑이 내국법인 을에게 정기예금이자로 11,000원을 지급하는 경우의 갑이 원천징수(특별징수포함)하여야 할 세액은?			
구 분	법인세	지방소득세	합 계
<종 전>	1,400원(=10,000원 × 14%)	-	1,400원
<변 경>	1,400원(=10,000원 × 14%)	140원(=1,400원 × 10%)	1,540원
	법인세는 동일	지방소득세 추가징수	

상기의 사례1)과 사례2)에서 갑이 원천징수한 법인세는 을이 추후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고, 갑이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는 을이 추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3. 법인이 이자소득을 수령하면서 특별징수당한 지방소득세의 처리 요령**

가. 특별징수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소득세

2014.12.31 이전에는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규정이 없었으나, 2015.1.1 이후에 귀속되는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지급자가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지급받는 법인으로부터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특별징수의무자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시 및 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특별징수당한 지방소득세의 처리

- 1) 특별징수의무자와 특별징수 당한 법인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경우
  - : 법인의 본점 소재지에서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2) 특별징수의무자와 특별징수 당한 법인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는 본점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이고, 일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관할 시·군인 경우
  - :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지방법인세 산출세액을 각 시·군 소재 사업장의 종업원 수 및 사업장 연면적으로 안분계산한 후, 각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특별징수 당한 지방소득세만을 기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한 후 차감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산출하여 기재한다.

- 3) 사업장이 없는 시·군에 소재한 특별징수의무자(금융기관 등)로부터 특별징수 당한 경우의 처리  
: 특별징수의무자 관할 시·군별로 특별징수영수증 및 특별징수내역을 첨부하여 환급  
신청을 함으로써 환급을 받는다.